

제목	국문	DRG 지불제도 도입 후 제왕절개술에서의 의료의 질 변화			
	영문	Changes in Quality of Care for Caesarean Section after Implementation of Diagnosis-Related Groups/Prospective Payment System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임준, 권영훈, 흥두호, 김창업, 김용익, 신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			
	영문	Jun Yim, Young-Hun Kwon, Du-Ho Hong, Chang-Yup Kim, Yong-ik Kim, Young-Soo Shin <i>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</i>			
분야	보건관리 [의료의질]	발표자	임준 [전공의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
1. 목적

의료비 상승과 행정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고, 97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. 시범사업에서는 사망, 합병증, 재수술, 재입원 등 질 저하를 의심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DRG의 대부분이 중증도가 낮은 질병군인 관계로 결과지표만으로는 질 저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제왕절개술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정지표 중심으로 평가하였다.

2. 방법

DRG 도입에 따른 제왕절개술에서의 의료의 질 변화를 보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5,033명 중 134명의 환자와 DRG 지불제도 하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43,857명 중 268명의 환자를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대상자는 중증도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단순제왕절개술인 DRG 번호 37000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. 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통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. 결과지표로는 합병증 발생률, 재수술률, 사망률 지표가 사용되었다. 과정지표로는 PPI, 수술전후 필수검사시행 지표 등이 이용되었다.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유형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의 변화가 필수검사시행 등 과정 측면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.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.

3. 결과

행위별수가제도의 적용을 받은 군과 DRG 지불제도의 적용을 받은 군간에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($P>0.05$).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최종분석모형에서 PPI 점수와 수술 전후의 필수검사 시행여부 등과 같은 과정 측면에서의 지표만을 질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. PPI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의 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필수검사시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의 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의료기관 소재지, 의료기관 소유형태, 의료기관 유형, 입원 전 외래 방문횟수 등이었다.

4. 고찰

본 연구에서는 의료의 질을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나, 결과지표로 사용한 사망, 합병증, 재수술 등의 빈도가 너무 작아 과정지표만을 질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. 결과지표의 민감도가 떨어진 이유는 연구 대상이 단순제왕절개술 환자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.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PI

항목과 가중치를 정하였으나, 구성원이 두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. DRG 지불제도 도입 후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으나, 제왕절개술에 관한 한 DRG 지불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정 측면에서의 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. 그러나 연구대상 질환이 위험도가 크지 않은 단순제왕절개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험도가 크거나 변이가 큰 DRG 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. 또한 표본수가 작아 대표성에 한계로 작용하였고, 의료제공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, 의무기록의 표준화 정도가 자료원의 변이가 크다는 것도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.